

용인소방서 공고 제2023-13호

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0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 처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폐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 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3. 11. 28.

용 인 소 방 서 장

1. 건 명 :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2. 근 거 :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0조 제3항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대상명	대상물주소	관계인	거주지 주소	위반법규	납부기간 (의견제출기간)	지방세입계좌
				위반사항	과태료금액(원)	가상계좌
구) 하00우 주유소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0000	강0형	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0 1번길 00-0	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0조 제3항	2023. 12. 29.(금)	41000-22351-00049 -3511
				제조소등의 지위승계 미신고 (주유취급소)	5,000,000원 (자진납부 시 4,000,000원)	국민은행 452590-73-119854

4. 공고기간 : 2023. 11. 28. ~ 12. 12.(15일간)

5. 과태료 및 의견제출 문의 :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(031-8021-0392)

6. 공시송달 내용 :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0조 제3항에 따른 주유취급소 지위승계 미신고 사항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(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)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전달(송달)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 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7.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(031-8021-039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:	
	당사자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평택소방서장 귀하
의견제출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